

AIPCE 국제컨퍼런스 참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 대구중재부 김정숙 위원, 정책연구팀 이홍길은 2012. 10. 18. ~ 19.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에서 개최된 제14회 AIPCE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활동 현황 등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했다.

이홍길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 AIPCE 개요

AIPCE(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는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같은 언론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의 네트워크로 공식적인 회원사가 있거나 사무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결성 당시 대다수 유럽의 언론평의회가 주축이 되었기에 유럽 언론평의회 연합(AIPCE)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AIPCE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¹⁾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런던에서 결성되어 매년 1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영국(1999년), 독일(2000년), 아일랜드(2001년), 몰타(2002년), 스웨덴(2003년), 키프로스(2004년), 룩셈부르크(2005년), 불가리아(2006년), 스코틀랜드(2007년), 독일(2008년), 노르웨이(2009년), 네덜란드(2010년), 러시아(2011년), 벨기에(2012년)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Tel Aviv)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AIPCE 초기 회의에는 대부분 유럽권 국가에서 참석하였으나, 비유럽권 국가의 참석이 빈번²⁾해짐에 따라, 올해 회의 중에는 AIPCE가 유럽 언론평의회

연합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결국 명칭은 유지하되, 아래 그림 <AIPCE 참석 국가>처럼 AIPCE 홈페이지 상 유럽권 국가와 비유럽권 국가로 구분하는 것으로 논의가 종료되었다.

■ 2012년 회의 주제 및 쟁점

올해 회의는 아래 표 <2012년 AIPCE 회의 주제>와 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언론평의회에서 주된 관심사와 회의 쟁점은 언론평의회와 실효성 강화 방안과 재정 위기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의 PCC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평의회가 언론에 대한 현행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 및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등장에 따른 기존 언론매체의 수익 감소와 그로 인한 언론평의회와 재정 불안정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발표를 들은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연간 사건처리건수 및

1)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인과 발행인이 대중의 감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규제 시스템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화가 다른 만큼 각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34개국이 참석한 올해 AIPCE 회의에는 비유럽권 국가로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스리랑카, 파키스탄 언론평의회가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사무처 규모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학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및 위원회 결정이나 조정을 통한 합의 등이 이뤄진 경우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중재결정)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집

중적인 관심과 부러움을 표시했다.

AIPCE 참석 국가

유럽권 국가(31개국)		비유럽권 국가(12개국) ^{*)}	
Armenia	Italy	Botswana	South Africa
Austria	Kosovo	Israel	South Korea
Azerbaijan	Luxembourg	Kyrgyzstan	Sri Lanka
Belgium (F)	Malta	New Zealand	Thailand
Belgium (W)	Moldova	Pakistan	Washington (USA)
Bosnia	Montenegro	Peru	Zambia
Bulgaria	Netherlands		
Croatia	Norway		
Cyprus	Russia		
Denmark	Serbia		
Estonia	Spain		
Finland	Sweden		
France	Switzerland		
Germany	UK		
Hungary	Ukraine		
Ireland			

출처 : AIPCE 홈페이지 <http://www.aipce.net> 초기화면

※ AIPCE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나라를 클릭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영문)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위 그림의 해당 국가는 각국 언론평의회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다.

2012년 AIPCE 회의 주제

주제
1.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활동 현황
2.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윤리적 딜레마
2-1. 우도아섬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보도 : Per Edgar Kokkvold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2-2. 어린이 희생자의 사진 : Dominique von Burg (스위스 언론평의회 위원장)
2-3.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 사진 : Lutz Tillmanns (독일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3. 온라인 보도의 정정 : 공정한 정정보도 방법은 무엇인가? : Risto Uimonen (핀란드 언론평의회 위원장)
4.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평의회 의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4-1. PCC와 레버슨 청문회 : Robert Pinker (前 PCC 임시 위원장, 前 런던정경대 사회학 교수)
4-2. 온라인 이슈 : John Horgan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위원장)
4-3. 언론윤리네트워크 : Aidan White (언론윤리네트워크 사무총장, 前 IFJ 사무총장)
4-4. 덴마크 - 법률에 의한 규제 : Sanne Godthaab Olesen (덴마크 언론평의회 디렉터)
5. 표현, 미디어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인격권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변화 : Dirk Voorhoof (벨기에 겐트대 언론 · 저작권 · 언론윤리학 교수)

3)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AIPCE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2012년 회의에 참석한 비유럽권 국가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와 이스라엘,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언론평의회이다.

1.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활동 현황⁴⁾

■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송불만처리위원회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of South Africa, BCCSA)

남아프리카는 1960년대부터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표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다. 그러나 1993년 두 기관은 방송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에 의해 설립된 방송불만처리위원회(BCCSA)로 통합되었다. BCCSA는 이전의 언론평의회나 광고표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지 않고, 단지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신청만을 처리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매체에 대한 일부 통제가 국가안전보장법 등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영화 및 발행에 대한 정부기관(Films and Publications statutory Board)도 존재하고 있으나, 신문과 방송, 광고는 법률 등에서 제외되어 자율적인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여당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는 의회에 BCCSA의 옴부즈맨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은 부적절한 것이며, 언론소청심사부(Media Appeals Tribunal)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에 맞서 2011년 BCCSA가 중심이 된 언론계는 언론자유위원회(Press Freedom Commission)를 구성해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은 헌법적 권리인 신문의 자유에 최선이며, BCCSA의 업무처리 절차 중 가장 첫 단계인 옴부즈맨에 의한 결정은 항상 1인의 언론 전문가와 1인의 일반인과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 등

의 선언문을 공표하였다. 또한 BCCSA는 윤리강령을 개정해 반론권과 보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조사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명예, 사생활, 존엄성에 대한 보호 내용을 추가하였다. 현재로서는 정치권이 이러한 BCCSA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언론소청심사부의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CCSA는 19년 동안 방송에 대한 불만도 처리해 왔으며 하나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 시스템은 대중과 정부로부터 공정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1,500건의 사건이 처리되며 그 중 10% 정도에 대해 BCCSA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BCCSA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며, 벌금이 부과된 대부분의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존엄성과 관련한 사건이다. 일례로 올해 경찰이 한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으나, 여러 라디오 방송국들은 그가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검찰이 한 남성에게 대해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한 방송국이 그를 소아성애자라고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한 사건도 있었다.

■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Norwegian Press Council, NPC)⁵⁾

1929년 설립된 NPC는 총 7명의 위원(노르웨이 언론인 연합이 지명하는 2명의 언론인, 편집인 협회에서 지명하는 2명의 편집인, 노르웨이 언론협회의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일반인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항상 언론인이나 편집인 중 선출한다. NPC는 인쇄,

4) 해당 국가별 언론평의회 명칭은 대부분 모국어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를 위해 가능한 영어로 표시하였으며 정확한 명칭은 AIPCE 홈페이지(www.aipce.net)에 접속해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언론평의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그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5) 계간지 「언론중재」 1986년 겨울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9년 가을호 '해외시찰보고서'에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유형의 언론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며, 운영재원은 완전히 가입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NPC는 2010년 284건을 처리했으며 2011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사건수인 354건을 접수, 151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올해는 9월 첫 주까지 247건을 접수했는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사건수에 있어서 올해 새로운 기록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NPC의 문서와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약 50%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진다. 또한 매 회의마다 논의한 여러 사건 중 3건을 노르웨이 언론인협회의 회지이자 홈페이지인 'Journalisten(www.Journalisten.no/video)'에 온라인으로 게재하는데, 그 이유는 NPC 업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넓히고자 함이다.

한편, 반론권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간주되며 비난을 받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이 원칙은 다른 많은 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언론의 윤리적인 기준이었으나, 윤리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간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접수된 사건의 거의 50%에 달했다. 이에 NPC는 2011년 “보도로 인해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적인 정보 확인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반론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권을 명시한 윤리강령 4.14조를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NPC는 그간의 선례와 업무에 기초해 윤리강령의 반론권 조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비난의 당사자에게 반론할 확실한 기회를 언론이 부여하고, 비난은 있는 그대로 명확한 내용으로 해야 하며, 편집인은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난의 대상자에게 답변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금융가에게 퇴

근 직전인 오후 3:30에 전화를 해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다음날 출근 직전인 10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기자는 몇 주 동안이나 해당 사건을 파헤친 반면, 당사자인 금융가는 퇴근 혹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수 있고 답변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든 당시, 이를 편집인들이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앞으로 윤리강령 4.14조 위반은 없을 것이라 NPC는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경솔한 발언이었고,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접수되는 사건이 여전히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론권 조항 위반이 그간 NPC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사건이었으나, 올해는 2위로 내려섰다는 점이다.

■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New Zealand Press Council, NZPC)⁶⁾

NZPC의 업무량은 그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 9월에 이미 전년도 전체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사건을 처리했다. 많은 사건들이 NZPC 사무처 담당자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는 주로 온라인 기사에 대한 불만신청이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2개 신문사가 한 선생이 두 어린 학생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시리즈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두 학생과 그 엄마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기사에는 당사자인 선생이나 학교 이사회 및 학교장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교무위원 불만평가위원회에 의해 해당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후 선생은 기사에 대해 2012년 7월 불만을 신청했다. 사실 이 사건의 기사 내용은 보도 당시에는 정

6) 계간지 「언론중재」 1987년 겨울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1년 겨울호 및 2007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에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학교장 등 다른 관계자들도 보도에 앞서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NZPC 담당자는 결과적으로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므로 원 기사에 정정내용을 주석으로 달 것을 제안하였고, 언론사가 이를 이행함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었다.

2012년 9월 24일 뉴질랜드 언론평의회는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전망, 회고, 변함없는 불변의 진실'이라는 공공 포럼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불변의 진실이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으로, 이는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와 무관한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의해 여타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전제하거나 이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할 여지가 커졌다. 만약 NZPC의 결정이 이뤄진 잘못된 원래 기사를 여타 언론사가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한다면, NZPC는 해당 언론사에 그 기사가 NZPC 결정 대상임을 표시하고 NZPC 웹사이트에 게재된 최초 결정 내용과 링크를 하도록 요청한다. 잘못된 원래 기사를 참조해 여타 인쇄 매체가 추가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앞서 기사를 게재한 인쇄매체가 공표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 내용을 참고해 NZPC가 문안을 작성,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는 두 개의 미디어 규제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1989년 법령에 근거한 BSA(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⁷⁾는 라디오와 TV 방송사를 승인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법령은 온라인과 같은 전자적인 매체의 증가에 앞서 제정된 것이므로 라디오와 TV 방송사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반면 NZPC는 회원사인 신문과 잡지, 그리고 이들의 웹사이트 및 3개의 온라인 뉴스에 대

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라디오와 TV 방송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처리 업무도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BSA와 NZPC의 통합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 'News media meets New Media'를 공표했고, 이에 대한 논의에 NZPC는 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NZPC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적인 매체도 이러한 자율규제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율규제 방식은 결국 정부가 법률위임으로써 규제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다. 법률위원회의 최종 제안은 12월에 있을 전망이다.

■ 네덜란드 언론평의회

(Netherlands Press Council, NPC)⁸⁾

2011년 NPC는 78건의 불만신청과 13건의 검토요청을 접수했다. 취하된 사건은 6건이고, 21번의 회의를 통해 69건을 처리, 89건의 결정을 했다. 사건처리 건수와 결정건수가 다른 것은 각 사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용 혹은 부분 인용 및 기각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이 2인 이상의 기자에 대한 것일 경우 또는 신청인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복수의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NPC가 각각 다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89건의 결정은 54개 매체와 1권의 책에 대한 것으로, 이 중 45건은 완전 또는 일부 인용한 것이고 29건은 기각한 것이다. 다른 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불만신청 이유는 신청인과 관련한 심각한 비판 보도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들은 비판의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7) 계간지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해의시찰보고서'에 BSA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8) 계간지 '언론중재', 1989년 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에 네덜란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NPC가 결정을 한 사건도 다수 있는데, NPC 결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부정확 혹은 악의적인 보도 약 68%, 일방적 주장 49%, 사생활 34% 등이었다(중복 산정).

올해는 9월까지 62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최근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사건은 신청인을 망명신청 접수처의 감독관으로 보도한 NOS 뉴스에 관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나 신청인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C는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온라인 상으로 의견을 구한 것은 충분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반면 NPC는 보도내용에 사실과 주장,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었기에 편향적인 보도가 아니며, 신청인의 업무 차량의 번호판이 잠시 보도된 것으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한 즉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자들의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나 심각한 비판 내용의 의견(리플)을 삭제하는 등 NPC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하였다.

한편, 2012년 봄 NPC 홈페이지를 개편, 온라인으로 불만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NPC는 실효성을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NPC 이사회와 NPC 설립에 관련한 다른 외부 기관들에 의해 통과된다면 2013년 NPC는 새로운 이름과 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 독일 언론평의회

(German Press Council, GPC)⁹⁾

GPC는 2011년 많은 사건이 접수되어 바쁜 한해를 보냈다. 2010년 1,661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신문, 잡지, 온라인 기사에 관해 1,323건을 처리했다. 2010년 사건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2개의 특정 사건에 대한 약 440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독일의 풍자 잡지인 TITANIC의 2010년 4월호 표지에 대한 약 200건의 신청과 2010년 7월 24일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러브 퍼레이드(love parade) 행사 중 21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사건 보도에 대해 약 240건의 불만이 있었다. 반면 2011년에는 단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신청이 있었는데, 2011년 10월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에 관한 보도에 대해 약 50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2012년에는 2개 매체에 대해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얼룩이 묻은 캐속(cassock, 성직자들이 입는 옷)을 입은 교황을 묘사한 TITANIC 7월호 표지와 독일의 주요 황색신문 BILD의 8월호에 게재된 동성 간 결혼을 다룬 칼럼인 “Post von Wagner(바그너의 편지)”에 대해 약 250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2012년 연간 처리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PC는 2012년 9월 18일 베를린에서 연간 컨퍼런스 개최해 몇몇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언론이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언론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부터 개인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자의 불만이 GPC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비록 언론이 개인의 SNS에 접근해 거기에 기록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9) 계간지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해외실무연수보고서'와 2011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에 독일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원칙상 SNS에 대한 자료조사는 언론인의 적법한 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언론이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SNS에 기록된 정보를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GPC의 입장이다. 나아가 언론이 SNS의 사적인 정보를 공표하는 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비교형량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며, 이는 윤리강령 8조(개인의 권리)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과 삶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와 교차된다면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공표가 공익과 무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언론은 정보의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데이터의 편집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둘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보도와 범죄자에 대한 보도는 서로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GPC의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 모두 동일하게 윤리강령 8.1항의 적용을 받았다. GPC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범죄자에 대한 보호와 분리된 규제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재 윤리강령 8조와 그에 따른 세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수년간의 판례에서 약화되어 왔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GPC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슈임을 재차 확인했다.

■ 덴마크 언론평의회

(Danish Press Council, DPC)¹⁰⁾

DPC는 8명의 위원과 이들의 부재를 대비한 8명의 대리 위원, 그리고 4명(법률가 2명, 사무총장 1장, 법학 전공 학생 1명)의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12회 개최되는 심리에는 대법관인 위원장 또는 변호사인 부위원장과 편집인, 언론인,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 각 1인이 참석해야 한다.

2011년 DPC는 157건을 접수해 107건에 대해 심리를 개최했다. 완전 혹은 부분 인용한 사건은 37건이며 그 중 34건은 언론의 책임에 관한 법률(Media Liability Act) 제49조에 따라 DPC 결정 내용을 언론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하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언론사에 결정 사항을 송부하였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0일이며, 기각된 사건의 경우 평균 9일이 소요되었다. 기각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이며, 2011년 접수된 157건 중 기각된 52건(50건은 심리전, 2건은 심리후 기각)의 주된 기각 사유는 신청인이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거나 불만신청기간(보도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이 도과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9월 말까지 75건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고, 51건을 기각했다.

DPC는 2011년 연간보고서에 ‘언론사는 피해구제 보도문이 눈에 잘 띄도록 위치나 편집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게재 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비록 원보도문이 1면에 게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정정이나 사과문을 1면에 공표하라고 결정한 바는 없었다. DPC는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위치나 편집은 편집적인 관점에 따라 편집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뒤야 한다는 것이 주요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이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2012년 5월 7일 DPC는 정정보도를 1면에 게재할 것을 결정, 언론사에 요청하였다. 타블로이드지 Ekstra Bladet는 1면에 ‘끔찍한 의사들의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보건

10) 계간지 「언론중재」 1988년 여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에 덴마크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당국에 의해 적발된 6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하고, 그들의 수술 방법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이 서로 환자를 소개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들 6명 중 1명으로 보도된 신청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보건 당국에 의한 적발 사항도 성형수술이 아닌 다른 사안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PC는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신문에 요청했고, 신문사는 1면에 신청인의 사진과 정정된 이력사항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2012년 2월 국회 법사위원회와 문화위원회는 공동으로 언론의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정보도문과 DPC 결정문의 적절한 게재 방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DPC가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불만신청을 위한 시간적 제한(보도된 날로부터 28일)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불만 접수를 위한 조건이 너무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불만신청이 없더라도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DPC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DPC와 언론사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5월 9일 이러한 제안에 대해 두 위원회 관계자와 DPC, 인쇄 및 전자매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대표자들이 참석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DPC 위원장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금이나 언론사에 피해를 주는 형태의 여타 강제적인 조치는 이미 1990년 DPC ‘언론의 책임에 관한 보고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고, 그러한 조치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며 덴마크 헌법 제77조의 첫 문장(“사람은 누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구속은 법원의 책임이다”)에 명시된 것처럼 법원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만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언론계뿐 아니라 DPC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그 기간이 각각 3개월, 6개월인 것처럼 덴마크에서도 기간을 연

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전자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언론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1992년에 제정, 1998년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러시아 언론평의회

(Russian Press Complaints Council, RPCC)

2005년 80개 이상의 언론사와 언론과 무관한 비정부 조직의 비공식적 동의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인 RPCC는 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언론매체에 대한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PCC는 2개의 위원회, 즉 독자위원회(Chamber of Media Audience)와 언론인위원회(Chamber of Media Society)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된다. RPCC는 설립 이후 올해 초까지 약 70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7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2012년에는 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RPCC는 올해 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RPCC의 역사, 구성, 규정,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 윤리 및 자율규제에 관해 특화된 전자 도서관을 구축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멀리서도 불만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AIPCE의 새로운 소식과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속해있던 공화국 중 12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인 독립국가연합(CIS)의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RPCC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반영했다.

■ 몰도바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from Republic of Moldova, PCM)

PCM은 2009년 10월 1일 독립언론협회, 독립저널리즘센터, 언론인협회 등 6개의 언론 관련 비정부 기

관에 의해 설립된 전국적인 조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독자와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CM은 임기 2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에서, 다른 5명은 일반 대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측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임명된다. PCM의 기본 임무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사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몰도바 언론인의 직업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신뢰할 만한 저널리즘을 권장하는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PCM은 설립 이후 2010년 12월까지 10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언론의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 대해 PCM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중 29건에 대해 언론인의 의무강령(Journalist's Deontology Code)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고, 언론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의무강령 위반 사례는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난 기사를 게재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절 및 공표된 내용의 동의 없는 사용이 10건, 어린이와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 위반 6건, 차별적 내용 보도 3건, 끔찍한 방송영상 보도 2건, 잘못된 정보 공표와 이익 분쟁에 언론인 연루 1건,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률 위반 1건 등이었다.

동 기간 동안 PCM의 또 다른 주요 활동으로 언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언론의 아동 보호, 언론과 무죄 추정의 원칙, 보도 시 관용과 차별철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홍보책자 “새로운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율규제 규범”을 발행하였다.

한편, PCM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몰도바 동유럽 기금(East European Foundation from Moldova, EEFM), 덴마크 외무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 여러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또한 2011년 유럽위원회와 EU가 “

몰도바의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PCM은 참석한 언론사 대표자들에게 몰도바 언론인의 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결국 2011년 5월 3일 새로운 윤리강령이 88개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in Bosnia and Herzegovina, PC BiH)

PC BiH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지면매체와 온라인 매체에 대한 198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이 사생활 관련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였다. 인용된 사건은 65건으로 그 중 윤리강령 제7조 ‘반론 기회(Opportunity to Reply)’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제3조 ‘선동(Incitement)’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불만이 각각 17건이었다. 제4조 ‘차별(Discrimination)’ 조항과 제10조 ‘형사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Persons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조항에 관련한 불만도 각각 6건이었다.

PC BiH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라디오 프로그램 “ZOOM ? Your Voice in the Media”에 참여한 것이다.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PC BiH 직원, 젊은 저널리스트, 언론윤리 관련 수업이나 PC BiH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언론윤리, 언론법제, 언론의 자율규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의 권리,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의 주제로 방송한다. 올해는 10월 15일까지 총 25회 방송되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역의 28개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또한 PC BiH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청년 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32개 도시에서 PC BiH 업무에 대한 홍보 및 언론의 자율규제와 관련한 2개의 공공 캠페인을 수행하였다. 청년 협회와 고등학생 협회의 각 지부는 해당

지역 언론사와 시청, 대학 언론학과를 방문하는 한편, 지역마다 정보 안내소를 설치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책임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약 600명의 봉사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PC BiH는 예비 언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언론학 전공 학생들에게 5일 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언론윤리와 언론의 자유, 언론윤리강령, 언론법제, 언론의 공적 이익과 인격권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PC BiH 내부 강사와 유럽 지역의 저명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집중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련 EU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 “PC BiH는 사법기관과 협력하며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일반 시민에 의한 불만신청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법적인 권리의 인식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PC BiH의 재정과 인력의 부족은 언론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자 하는 PC BiH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PC BiH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EU의 긍정적인 평가는 다행스런 일이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PC BiH의 재정 불안정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PC BiH뿐 아니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등 서부 발칸 국가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언론평의회의 강제력이 없고, 특히 언론평의회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직원수 등 규모가 적어 현실적으로 현재의 자율규제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벨기에 언론평의회 (Belgium Press Council)

벨기에는 민족 구성 및 인접 국가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플라망 족(族)이 대부분인 벨기에 북부 플레미시(flemish, 불어로는 플랑드르)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와 독일어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언론은 독일어로 발행 또는 방송된다. 반면 왈론 족(族)이 대부분인 벨기에 남부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론사도 불어로 발행 또는 방송된다. 이러한 이유로 벨기에 언론평의회는 두 곳으로 나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벨기에 북부 지역

— Raad voor de Journalistiek (RvdJ)

2002년 설립된 RvdJ는 신문 발행인과 라디오, TV 등 방송사에 의한 50%와 언론인 협회로부터 50%의 기금을 받아 운영한다. 언론인 협회는 RvdJ 지원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RvdJ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장은 벨기에 최고 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 법관이다. RvdJ를 실제로 운영하는 책임자이자 옴부즈맨인 사무총장은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청인과 관련 기자 및 언론사와 대화를 통해 ‘공식적 절차 외(out of council)’ 해결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건이 해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RvdJ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RvdJ 홈페이지와 잡지 ‘De Journalist’에 공표된다.

2011년 RvdJ는 2010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75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사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0년 9월 새로이 공표된 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논의 덕분에 일반 시민과 변호사, 중재인 등이 RvdJ의 존재 여부와 그 기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접수된 사건 중 17건은 사무총장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졌고, 사무처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2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기

를 부여하는 선고(motivated adjudication)를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인용 또는 부분 인용을 하였다. 인용하지 않은 사건은 12건이며, 일견하기에도 논의의 필요성이 없었던 10건은 기각했다. 접수된 사건의 대략 50%는 부정확한 보도가 신청 원인이었고, 35%는 사생활 또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불만이였다.

2012년 상반기 처리건수는 40건으로 2011년과 다소 유사한 수준이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2012년 3월 13일 스위스에서 발생한 버스사고로 희생된 벨기에 초등학생들의 사진을 두개의 유력 신문사가 이들의 개인 홈페이지와 SNS에서 찾아 부모의 동의 없이 공표한 사건이었다. RvdJ는 신청인과 두 신문사의 편집인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눈에 잘 띄는 지면에 사과문을 공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올해 4월에 RvdJ는 언론이 개인의 홈페이지와 SNS 사이트 상 사진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례는 모 지역신문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한 법정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건이었다. 신청인은 여론조사 결과가 재판을 방해할 수 있고 배심원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RvdJ는 이를 인용했다.

한편 벨기에 미디어부(Minister of Media)는 2010년 9월 새로운 윤리강령을 공표하는 공식 석상에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모든 언론매체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RvdJ에 협력해야 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2년 7월 플레미시 정부는 RvdJ에 협력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11개 지역 TV 방송국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승인했다.

② 벨기에 남부 지역

— Conseil de Deontologie Journalistique (CDJ)

CDJ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2건의 불만을 처리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적은 수

치이나, 2012년 들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2건 중 14건은 2012년 10월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고, 17건에 대해서는 ‘견해(Avis)’ 결정을 했다. CDJ가 인용한 사건의 대부분은 언론인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것(9건)과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한 사건(8건)이다. 간혹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은 한 장관이 자신이 성희롱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공영방송 RTBF를 상대로 한 신청이었다. 신청인은 비록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증인의 인터뷰 등 보도 내용을 통해 대중들이 관련 인물이 자신임을 유추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CDJ는 논의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2011년 10월 CDJ는 언론이 보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독자들이 답글(리플) 등으로 의견을 남길 때와 같이 언론사가 토론의 장으로써 자사 홈페이지를 대중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인종차별과 같은 각종 차별적 내용이나 증오 및 폭력성을 자극하는 내용 등을 피하기 위해 언론사가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CDJ의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언론사의 준수 여부는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론인의 직업적인 규범을 발표하고 정의하는 것이 CDJ의 중요한 업무 목표 중 하나이며, 그 일환으로 2012년 3월 기자의 취재원과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저널리즘 및 광고, 선거 캠페인,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토론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한 지침서 “Les carnets de la deontologie(Notebooks of Ethics)”를 발행했다.

■ 스리랑카

(Press Complaints Commission of Sri Lanka,

PCCSL)

PCCSL은 1998년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리랑카 편집인협회 및 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 등이 콜롬보에서 개최한 국제 세미나인 ‘콜롬보(Colombo) 선언’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영국의 PCC, 스웨덴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론평의회가 그 모델인 PCCSL은 스리랑카 신문에 대한 자율규제체이며, 1995년 제정된 중재법 11조에 의거해 언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2011년 PCCSL은 142건의 불만을 처리했으며, 만약 신문사가 2개월마다 1회 개최되는 PCCSL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Council)의 결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콜롬보 고등법원에 그 이행의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신문사들이 PCCSL의 결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

PCCSL은 스리랑카 언론협회(Sri Lanka Press Institute, SLPI)와 언론의 자율규제에 관한 주제로 2일 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경찰 언론 대변인의 요청에 따른 공개 포럼 1회와 자살보도에 대한 주제로 편집인과 기자, 일반 대중을 위한 공익 포럼 1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 책임자와 학교장, 선생들과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PCCSL의 실무적인 업무 절차와 언론인의 직업태도,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스리랑카의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PCCSL과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이 GCE O-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 Level, 스리랑카의 대학입학 시험인 A-Level 준비 과정) 및 A-Level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한편 몰디브에 PCCSL과 같은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몰디브 기자회견을 대표해 3명의 몰디브 언론인이 PCCSL을 방문, PCCSL의 업무와 스리랑카 언론윤리강령을 교육받고 갔다.

■ 스웨덴 언론평의회

(Swedish Press Council, SPC)¹¹⁾

SPC는 2011년 약 300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몇 년간 처리건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온라인 불만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다수의 사건이 SPC에 접수되었다. 그 중 하나는 빅토리아 공주가 한 가십 매거진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건으로, 해당 언론사는 당시 임신한 공주가 유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SPC는 이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많은 논란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비난을 야기한 사건으로 한 신문사가 캠브리지 공작 부인의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 보도로 해당 신문사는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TV 토크쇼에서도 이러한 사진의 게재가 정당한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설전이 오고 갔다. 논란을 야기한 해당 신문사는 보도내용의 공익성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다른 언론사와 비평가들은 타당한 공익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언론의 이러한 사진 공표 행위에 대한 사생활 보호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11) 계간지 「언론중재」 1996년 여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1993년 겨울호 ‘스웨덴 언론평의회 정관 및 옴부즈맨의 실무규정’으로 스웨덴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문사들이 논평과 함께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언론자유위원회(Freedom of Speech Committee)는 이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그러한 법안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SPC의 존재 사실과 업무 활동을 언급했는데, SPC는 언론의 생활 침해 금지 등과 같은 언론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별도의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 스위스 언론평의회

(Swiss Press Council, SPC)¹²⁾

SPC는 2010년 81건, 2011년 8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82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완전 혹은 부분 인용을 결정했는데 인용된 사건의 대부분은 윤리강령 제3조(언론인은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되며, 핵심적인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된다) 위반이었다. 주목할 점은 제8조(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차별 금지)와 관련한 불만의 가파른 증가이다. 관련 조항의 위반은 2010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3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사건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반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SPC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SPC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고 2011년 2개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기사의 삭제 및 정정에 관한 것과 웹사이트 상 익명성에 관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지만 SPC는 기사 내용과 관련한 독자

의 비판적인 의견을 온라인 상 익명으로 게재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SPC는 지면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하기에, 기사에 대한 비판을 온라인에 답글(리플)과 같은 형태로 게재할 때는 지면매체와 동일하게 사생활이나 취재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단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게재해야 한다. 단, 온라인 매체의 경우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온라인 상 이뤄지는 공개토론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신속성과 즉흥성이 요구되어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한편, 스위스 의회는 SPC에 정부의 언론매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SPC는 언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은 신문 발송 우편비용의 경감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넘어 공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기금 마련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부의 개입 없이 언론사 스스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향후 몇 년 간 더 추세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 스페인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Spanish Catalan Press Council, SCPC)¹³⁾

SCPC는 다른 국가의 언론평의회와 마찬가지로 언론매체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윤리강령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SCPC는 기자, 대학교수, 정보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 중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1명이 사전에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모아 계간으로 개

12) 계간지 「언론중재」 1989년 여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6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에 스위스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13) 계간지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와 2010년 가을호 '해외실무연구보고서'에 스페인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최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언론사에 책임을 권유한다.

SCPC의 운영재원은 정부와 회원 언론사가 각각 50%를 부담하는데, 올해 스페인과 언론사의 재정위기가 결과적으로 SCPC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SCPC에 대한 올해 보조금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고, 신문과 라디오, TV 등 SCPC 회원사의 거의 절반이 올해 회비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탈퇴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탈퇴한 언론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 매체이며 여전히 두 개의 전국적인 언론 그룹은 회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2013년 말 이후 SCPC의 운영이 불투명하다. 언론사와 대중,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율규제의 이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SCPC가 접수한 사건도 2011년 30건에서 올해는 17건에 불과하다. 이는 언론이 윤리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을 경험하고도 불만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리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정부와 정당, 공공기관이 신청한 사건은 증가했으며 스포츠 뉴스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특히 성매매, 이민자, 범죄 등에 관한 보도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례가 빈번해 졌다. 한 신문사는 1면에 “공무원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바르셀로나의 소매치기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온 이민자라고 보도하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많은 독자들은 해당 기사가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공한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언론사를 비판했다.

한편 온라인 기술의 발전은 언론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소셜미

디어를 통해 공표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지어 언론이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정정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일일이 찾아내 정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언론인이 자신의 기사를 해외 매체에 공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만약 그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SCPC는 일절 개입할 수 없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국가를 돌아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 아르메니아 언론윤리감시체 (Armenia Media Ethics Observatory, AMEO)

2007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Yerevan)의 언론 클럽(Press Club)은 언론인의 직업 윤리 기준을 만들어 일상 업무에서 준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아르메니아 언론계에 발표했다. 같은 해 2월 2일, 언론 클럽의 제안을 지지하는 언론사 대표자 회의에서 이러한 윤리강령을 만들기 위한 실무팀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3월 10일 언론사 사장단과 언론인 협회 회의에서 윤리강령을 채택, 이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언론사들은 언론윤리감시체(AMEO)를 만들어 그 실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언론사들은 AMEO가 언론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의 개정을 공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자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AMEO의 결정 사항을 기꺼이 공표할 것임을 서약했다. 당시 16개 TV 방송사, 19개 신문사, 2개 잡지사, 3개 통신사, 3개 온라인 매체, 1개 라디오 방송사 등 총 44개 언론사가 윤리강령에 서약했으나, 2012년 10월 현재까지 추가 서약한 언론사는 없다.

한편 2011년에는 AMEO의 조직과 구성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11년 12월 24일 언론사와 언론

인 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융통성과 효율성을 위해 선출직인 AMEO 위원을 14명까지 늘리고 불만처리를 위한 위원 정족수를 7명으로 결정했다. AMEO 위원은 주로 3개 분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현직 언론인, 시민 대표자)에서 선출된다.

AMEO가 올해 처리한 주요 사례로 한 시민인 Anna Simonian이 사진 저널리스트인 Gagik Shamshian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2012년 2월 8일 Anna는 예레반의 한 자살 사건에 대해 Gagik이 작성한 사진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AMEO에 가입된 신문사 중 하나인 'Aravot'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기자는 자살 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해 희생자의 이름과 성, 나이 등을 특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신청인은 이 기사로 인해 희생자의 가족, 특히 그 자녀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MEO는 언론인은 자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취재할 때는 특히 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고, Aravot 신문사는 AMEO의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AMEO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AMEO를 통해 법원의 소송 사건을 줄이는 한편, 대중에게 AMEO가 언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더 많은 언론사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취재활동을 전개하도록 AMEO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Irish Press Council, IPC)¹⁴⁾

2011년 IPC가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은 77건이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인 266건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144건은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IPC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질의였고, 108건은 IPC 업무 영역을 벗어난 사건이었다.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제기된 불만 내용을 언론사가 수용해 합의가 이뤄졌고, 42건은 IPC 옴부즈맨에 의한 결정이 내려졌다. 옴부즈맨을 통해 해결되지 않아 위원회로 회부된 사건과 신청인이 철회한 사건은 각 1건에 불과했고, 7건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분류 중에 있다.

2011년 불만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사생활과 관련한 사건은 감소하였고,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대중에게 증오감을 부추기거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편견적 기사와 관련한 불만은 증가했다(그러나 증가 이유는 2개의 기사에 대해 64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IPC의 최근 몇 달 간의 주요 관심사는 영국의 레버슨 청문회,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의 사진 공표로 인한 논란 및 이로 인한 새로운 사생활 관련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레버슨 청문회는 IPC의 구성과 업무 처리방법에 대해 증언을 요구했고, IPC 위원장의 부재로 옴부즈맨이 대신 청문회에 참석했다. 아직 레버슨 청문회가 그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몇몇 측면에서 IPC를 모델로 해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IPC는 PCC를 대체할 새로운 영국의 언론불만처리기구인 법률에 의해 공인되거나 설립되어질 것이며 IPC나 기존 PCC 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나, 정부와 언론 양쪽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레버슨 보고서에 의한 영국의 새로운 언론불만처리기구의 설립과 구성이 IPC의

14) 계간지 「언론중재」 2009년 가을호 '해외시찰보고서'에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아일랜드에서도 IPC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이 상반신을 탈의한 영국의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사생활 침해라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이 IPC에 불만을 신청했다. 그러나 IPC는 이들이 보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기에 사진을 접수하지 않았다. IPC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한 신청은 그들이 해당 보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IPC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3월 IPC 연간 컨퍼런스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개인적으로 보도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IPC 옴부즈맨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IPC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그동안 옴부즈맨이 독단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도 항소를 통해 IPC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논란으로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사생활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2011년 이전부터 새로운 사생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일랜드 상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언론계의 지대한 우려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제정 의지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미들턴 사건을 비롯해 상당수 사건에서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자, 정부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한 경고로 새로운 법률의 입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 언론평의회

(Azerbaijan Press Council, APC)

APC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31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접수된 불만은 크게 사무처 조사(Examined at the Secretariat), 위원회 심리(Examined at the Commission), 이사회 결정(Examined at the Board)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불만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인과 언론사측 대리인에게 APC 사무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 310건 중 235건이 사무처를 통해 불만이 해결되어 절차를 종료했다.

만약 접수된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야 할 내용(올해 9월까지 접수한 310건 중 242건이 이에 해당함)이라면, 신청인은 APC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보류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한편 사무처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거나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부 등 법률 집행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불만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이 익명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22건이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대부분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거나 관련 조사가 법률 집행 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처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310건 중 75건)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달 2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먼저 위원회는 신청서 사본을 신문사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신문사의 답변서는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만약 이때 신문사가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여 신청인과 화해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일정과 장소를 통지하고 심리를 개최하는데, 심리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 참석 가능하다. 심리 중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결된다.

마지막 단계는 이사회 결정이다.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중국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 9월까지 9번의 회의를 통해 총 34건의 결정이 이뤄졌다. 이사회 결정은 공개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 만약 이사회에 참석한 위원이 해당 불만이 제기된 신문사 소속이라면 이사회 참석 자격을 잃게 된다. 이사회는 사건을 완전 인용, 부분 인용, 기각할 수 있고(올해 34건 중 완전 인용 24건, 부분 인용 3건, 기각 7건), 신문사는 APC 결정 내용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일간지의 경우 3일 이내)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APC 결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APC는 단지 신문사가 자발적으로 결정 내용을 발표하도록 권유할 뿐이다. 2012년 상반기까지 APC 결정을 신문사가 게재한 경우는 25건이었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APC 결정을 신문사가 아예 게재하지 않거나 APC가 작성한 결정 내용을 왜곡해 게재한 경우를 뜻한다. 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사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APC는 자체적으로 결정 내용을 공용 도메인(Public Domain)에 공개한다. 후자의 경우 APC는 신문사가 게재한 내용을 검토하고, 왜곡이 발견되면 최초 결정에 기초해 다시 문안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할 것을 신문사에 권유한다.

한편 APC는 우편이나 팩스로 결정문을 신청인과 신문사 측에 송부하는데, 이는 신문사가 그 결정을 공표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APC 결정은 분기별 정보 게시판과 APC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매스미디어에 공

표되고, APC 연간 보고서에 수록된다. 모든 결정내용은 APC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Austrian Press Council, APC)¹⁵⁾

APC는 2010년 중반 재설립 되었고, 같은 해 11월 업무를 재개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78건의 불만을 처리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02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전년도 동 기간 53건과 비교할 때 96%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2년에는 기존 9개 조항의 윤리강령에 제10조와 제11조, 2개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10조는 신문사에 고용된 사람과 언론인의 사적인 이익이 기사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안 된다는 것으로, 특히 금융과 경제 관련 기사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제11조는 APC가 주재한 2011년 12월 회의에서 자살 사건 취재와 관련해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오스트리아 언론사는 지하철역 등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고 대중교통 사업자와 신사협정을 체결해 왔다. 해당 신사협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장소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 비슷한 유형의 추가적인 자살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다양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의해 이러한 협정이 위반되었고, 이에 APC는 자살이나 자해사건 및 그러한 시도에 대해 언론은 보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윤리강령 제11조에 명시하였다.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APC는 현재의 언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개편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APC의 안정적 재원

15) 계간지 '언론중재', 1988년 가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6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 2007년 겨울호 '해외실무연수보고서'에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에스토니아 언론평의회

(Estonian Press Council, EPC)

EPC는 신문, 방송, 온라인 미디어 등 모든 매체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EPC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6명은 언론인, 4명은 언론 외 분야)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한 명의 임시직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의 본래 소속은 에스토니아 신문협회이다.

EPC는 가입 언론사의 회비로 운영되며, 2012년에는 상업 라디오 방송 Kuku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비록 EPC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EPC의 불만처리 절차에 동의한 언론사에 대한 불만 사항도 간혹 처리한다. 이러한 언론사들은 보통 규모가 영세한 곳으로 EPC 회비를 납부하기 어려워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곳이다.

그러나 EPC는 궁극적으로 언론사가 사내 옴부즈맨과 같이 가능한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가지길 바란다.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옴부즈맨을 보유한 언론사는 공영방송 ERR이 유일한데, 만약 신청인이 옴부즈맨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EPC에 불만을 신청하게 된다.

2011년 EPC는 67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접수된 사건이 30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록 EPC가 온라인 매체에 대한 불만도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사건수가 많지 않은데, 신문사들이 EPC에 불만이 접수된 사실을 안 즉시 그들의 홈페이지 상 기사를 수정 또는 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EPC에 온라인 상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EPC는 일반

적으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검색의 용이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비호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 언론사에 기사의 완전 혹은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올해 사건수 감소의 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한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조인들이 이전에 비해 불만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 몇몇 사건은 매우 상세하고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처리한 사건 중 아주 드문 사례가 있었는데, 에스토니아 수상 Andrus Ansip이 주간지 Eesti Ekspress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통상 유명 정치인들은 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신청인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EPC는 언론사가 심각한 비판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윤리장령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학생을 위한 모금액을 한 지역 의회가 착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의회 의장은 보도된 내용의 혐의를 부인했고 방송사가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만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의 PD가 지역 독자와 사업가들에게 학생의 가족에게 기부를 하라고 협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많은 언론사들이 본 사건 방송, 즉 신청인 시의회가 모금액을 착복했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는데 신청인은 이들 언론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사는 문제는 잘못된 보도를 한 최초 방송사

에 있고, 자신들은 이를 재공표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EP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보도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영했어야 한 다며 이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작년 한 해 동안 EPC의 지위와 언론윤리강령은 변화가 없지만,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 증가로 인해 이를 반영한 윤리강령의 개정 여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간혹 문화부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은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지나치게 언론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됨을 비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에스토니아 사회에서는 EPC가 접수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Israel Press Council, IPC)

이스라엘의 언론사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민영 TV 방송사와 두 개 주요 일간지의 중단 기적 생존이 점점 더 불확실한데, 이스라엘에서 단지 3개뿐인 전국적인 TV 방송 중 하나인 Channel-10은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긴급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Maariv와 Haaretz daily 두 주요 일간지는 편집담당 직원의 상당수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했다. 언론사의 이러한 위기 상황은 결과적으로 IPC에 심각한 재정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PC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언론평의회도 운영 재원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다고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모든 언론평의회가 결속해 UNESCO와 같은 국제적인 도움을 통해 미래의 자금 지원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IPC에 접수되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IPC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요 공적 인물과 공공기관이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 처리를 위해 다른 법률적인 절차보다 신속한 IPC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IPC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IPC는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예루살렘 대법원은 경찰에 자료 제공을 거부한 기자에 대한 소송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웨스트뱅크에서 정착민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 한 고위 군인을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공격했던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에게 당시 촬영한 사진을 요구했으나, 기자는 언론인의 비밀 특권이 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주(州)는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하급심에서는 원고 패소, 즉 기자는 경찰에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IPC는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국가의 언론평의회와 마찬가지로 IPC도 레버슨 청문회로부터 제시될 새로운 미디어 규제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 조지아 언론평의회 (Georgian Council of Charter, GCC)

3년 전 조지아 언론윤리헌장(Georgian Charter for Journalistic Ethics)의 제정과 동시에 GCC가 생겨났으며,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약 200명의 언론인이 언론윤리헌장을 주수하겠다고 서약했다. GCC는 9명의 위원(지역 언론사 대표자들 중 6인, 전국적인 언론사 대표자들 중 3인)으로 구성되어 언론윤리헌장에서 약한 언론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GCC는 올해 총 9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4개 사건은 서

약하지 않은 언론인에 대한 불만이었으므로 GCC의 처리 권한이 없었다. 또한 불만신청기간(보도가 있을 날로부터 3개월) 도과로 인해 접수하지 않은 사건도 1건 있었다.

GCC가 논의한 5건 모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신청이며, 대부분 신청 이유가 사실의 정확성에 관한 윤리헌장 제1조(언론인은 국민의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제11조(고의로 사실을 훼손하는 것은 언론인의 가장 심각한 직업적 범죄이다)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제3조(언론인은 확실한 정보에 의한 사실에 의거해 보도해야 한다. 언론인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선 안 되고, 문서와 정보를 위조해선 안 된다)와 제10조(언론인은 특별한 공익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도해선 안 된다)와 관련한 불만도 있었다.

한편 올해 조지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기간 동안 GCC는 “Memo 98”이라는 단체와 함께 TV 채널의 선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GCC는 3개월 동안 11개 TV 방송사의 뉴스와 토크쇼에서 선거 보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언론윤리헌장 위반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했다(TV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 92%의 조지아 국민이 TV 방송을 통해 선거 진행과정과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에 의한 비밀 시청각 자료의 사용이 많았다.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비디오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정치 관련 연구자들은 이 비디오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디오를 확산시킨 TV 방송국 등 몇몇 언론사가 폭력과 고문의 피해자인 수감자들을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이 친척과 이웃에 의해 특정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감자들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언론이 수감자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되지

않은 것이며 명예훼손적 요소가 많았다. GCC는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보도할 경우, 반드시 윤리헌장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성명서를 공표했다.

■ 코소보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of Kosobo, PCK)

PCK는 2005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코소보 파견단의 협력으로 설립, 그 해 11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PCK에 가입한 지면 매체에 대한 불만신청만을 처리했으나, 2009년 9월 정관을 개정해 온라인 매체도 PC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일부 주간지와 월간지를 포함해 코소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지의 90%를 회원사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PCK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5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6번의 회의를 통해 20건을 해결했다. 올해 사건 뿐 아니라 그간 PCK가 처리한 사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PCK 홈페이지(www.presscouncil-k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사와 온라인 매체, 그리고 일부 정기간행물을 대표하는 17명의 위원과 언론계와 독립적인 1명의 위원장 및 2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PCK는 언론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4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믿음 하에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전문성과 편견 없는 언론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PCK는 그 절차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에 대한 투명한 결정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는다. 사안의 복잡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불만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장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고, 이로 인해 지

금까지 어떤 신청인도 PCK의 업무와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PCK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비록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코소보의 일부 언론이 기업이나 정당으로부터 통제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코소보를 비롯해 남동 유럽 일부 지역의 많은 언론이 여전히 정치적 집단이나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견해와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과 거짓 뉴스를 통해 대중의 권익이 쉽게 침해될 우려가 크며, 대중의 전체 언론인에 대한 불신과 언론 및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PCK는 성명서와 다른 형태의 수단을 통해 언론사와 일반 대중, 특히 정당과 기업에 직업성과 윤리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해 왔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공표해 왔다.

한편 올해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코소보 법률에서 제외됨에 따라 PCK의 역할과 언론계의 자율규제 원칙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소보의 불안정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언론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회원사의 연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PCK 운영 재원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 키프로스 언론불만위원회

(Cyprus Media Complaints Commission, CMCC)

CRTA(Cyprus Radio and Television Authority)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CRTA의 일부 조치 사항에 대해 CMCC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비록 CRTA가 라디오, 방송에 관한 허가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나 CMCC의

서면 요청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들 매체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불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라디오, 방송 등을 비롯한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미디어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CMCC의 배타적인 권한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CMCC의 위상이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년간 CMCC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일부 영향력 있는 정책 입안자는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 하에서 일부 매체들이 CMCC의 결정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와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중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CMCC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의 명단을 공표해 창피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RTA는 CMCC의 권한을 명시한 해당 법률 조항과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CMCC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CMCC는 이에 협력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MCC는 현재 관련 법안의 초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행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하는 의회 구성원들과 향후 몇 개월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사와 CMCC 결정을 공표하지 않은 언론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CMCC는 윤리강령 그 자체를 위반한 언론사가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와 CMCC 결정을 공표하지 않은 언론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고, 벌금과 같은 형태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CMCC는 이러한 법안에 부합하도록 신문 발행인

과 TV 및 라디오 운영자, 언론인들에 의해 제정되고, 일부 온라인 뉴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윤리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CMCC는 새로운 법률 하에서도 기존의 CMCC 기능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고, 언론계와 키프로스 사회에서 CMCC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of Pakistan, PCP)

파키스탄의 경우 1954년 처음 설립, 1958년 재편성된 언론위원회(Press Commission)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언론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PCP 법령 2002(Press Council of Pakistan Ordinance 2002)'에 따라 2002년 10월 26일 PCP가 설립되었다. PCP는 언론이 직업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또한 국내외 신문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책임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CP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나 정부는 PCP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할당할 의무가 있고, PCP는 재원 조성을 위해 신문과 다른 언론매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내외로부터 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PCP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8건에 대해 결정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또한 PCP는 'PCP 법령 2002' 제9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성에 관한 문제 혹은 뉴스의 배포를 제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Suo Moto(독립적인 의사에 따라를 뜻하는 라틴어)"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언론인과 기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6건의 사건에 대해 'Suo Moto' 결정이 이뤄졌다.

PCP는 은퇴한 고법 판사나 그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1인의 위원장과 변호사 위원회(Pakistan Bar Council, PBC)에서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 그리고 17명의 위원(국회가 지명하는 2인, 파키스탄 신문협회, 파키스탄 신문편집인 위원회, 파키스탄 언론인협회가 지명하는 각 4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가 지명하는 각 1인, PCP가 지명하는 언론학자 1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PCP는 조사위원회, 항소위원회, 임명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접수된 불만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주된 업무는 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PCP는 당사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고 증거 수집과 증인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신속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사과문 공표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또한 경고(warning), 훈계(admonish), 견책(reprimand), 거부(disapprove)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PCP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신문사에 그 결정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사가 PCP 결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당국에 해당 신문사에 대한 허가 취소나 발행횟수 기준으로 7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중단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PCP는 Rs 10,000(원화로 약 150,0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사, 언론 유관기관, 언론 전문가 등의 논의 및 심의를 통해 제정된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언론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장려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PCP 법령 2002' 법령의 일부로 공표되었다.

〈파키스탄 언론윤리강령〉

- 제1조 - 언론은 비방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보도를 피하고, 도덕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조 -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제3조 - 언론은 편견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제4조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적인 가정사에 대해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 - 언론은 소문 혹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보도할 경우에는 소문, 확실하지 않은 보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6조 - 사진을 포함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 제7조 - 언론은 인종, 출신지 등으로 인해 차별과 증오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제8조 - 언론은 범죄를 영웅적인 행동으로, 범죄자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제9조 - 언론은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의 인쇄, 출판, 배포를 피해야 한다.
- 제10조 - 언론은 파키스탄 헌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자료의 출판과 배포를 지양해야 한다.
- 제11조 - 언론은 유해하고 잘못된 보도를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제12조 -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성을 피하기 위해 주의깊이 보도해야 한다.

제13조 - 언론은 폭력과 잔혹적인 내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자에 대한 보도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유죄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4조 -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 시에는 그 이름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공표해선 안 된다.

제15조 - 언론은 취재 시 동의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 언론은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할 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거주지를 함께 보도해야 한다.

제17조 - 언론은 금전 혹은 다른 이권의 분쟁을 야기하거나,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등 언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권이나 유인책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핀란드 언론평의회

(Finnish Media Council, FMC)¹⁶⁾

핀란드에서는 FMC에 대한 언론인과 일반 대중의 신뢰도가 높으며, 많은 언론사가 FMC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다. 또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핀란드 정부가 올해 부과한 VAT(부가가치세) 9%는 걱정할 만큼의 신문 발행(유통) 부수 감소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유럽과 핀란드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FMC의

16) 계간지 「언론중재」 1988년 겨울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에 핀란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재원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MC는 2011년 약 320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9월까지 23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FMC가 매해 100~140건을 처리했던 점으로 볼 때 상당히 증가한 편이다. 다만 2008년 처음으로 연간 처리건수가 200건을 넘어섰고 점차 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올해 법무부가 FMC의 예산 부담을 24%나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사와 언론인 협회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비록 기존의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들의 지위가 서유럽보다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온라인 기술 발전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가 기존 언론매체들뿐 아니라 FMC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온라인으로 인해 언론에 대한 언론인과 대중의 태도가 변화되었고,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충분한 확인 시간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사실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어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헝가리 독립저널리즘센터

(Hungarian Center for Independent Journalism, HCIJ)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HCIJ는 2007년 언론자유 규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지부지되다가 2010년 새로운 엄격한 언론법이 제정되면서 큰 진척을 보이게 되었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 국내뿐 아니라 EU, 국경없는 기자회, IFJ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등 국제적인 논의를 야기했으며,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된 후 현재의 법률로 개정되었다. 한편 2011년 여름, 언론정보통신국(National Media and Infocommunications Authority)의 미디어 위

원회는 4개 언론 전문기구와 협력규제 방안을 채택했으나, 이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는 제한성과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11년 9월 HCIJ는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윤리강령의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언론사 편집인 회의를 소집하였고, 올해는 헝가리 언론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에 돌파구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해가 되었다. 언론사의 결속과 윤리강령에 대한 동의를 위한 그간 노력의 결과로 2012년 2월 18일 지면, TV, 라디오, 온라인 등 모든 매체를 아울러, 총 33개사가 참여해 편집인 포럼(Editors' Forum)을 설립하였고, 긴 논의 끝에 제정된 윤리강령은 공정성, 정확성, 정보의 수집과 보도에 관한 규정, 이익이 충돌하는 보도의 금지, 기자의 의견과 광고의 명확한 구분 등 양심적인 저널리즘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제정한 윤리강령을 자사의 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HCIJ는 언론윤리 교육의 장려 및 지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적 저널리즘의 개념 전파, 자율규제 불만 처리절차의 완성, 언론윤리 문제에 대한 언론사 상담, 언론학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외국 판례 및 권고 등 사례 연구, 외국 전문 기관과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 윤리적 딜레마

2-1. 우토야섬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보도

Per Edgar Kokkvold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우토야(Utoya)섬에서 극우 테러리스트인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의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노동당 청년캠프에 참가한 학생 77명이 살해되고 242명 이상이 부상당함으로써 그 유족의 친구와 친척, 많은 국민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고, 2012년 8월 판사가 브레이빅에게 종신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료되었다. 브레이빅은 스스로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정신분열증과 강박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극우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원은 그가 자신의 테러 행위를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미래에는 대중으로부터 다문화 사회를 지지해온 모든 “반역자, 다문화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수비 차원의 행동을 한 것으로 칭송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노르웨이 언론계와 노르웨이 언론평의회는 이 사건으로 강한 압박을 받았으며, 특히 언론의 취재 및 보도행태가 준엄한 시험대에 올려졌다. 대중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고 명백히 트라우마에 빠진 젊은이들을 언론이 경쟁적으로 인터뷰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언론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언론은 유족들에 대해 많은 배려를 했고,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담긴 잔혹한 사진이나 영상을 뚜렷하게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독자들과 시청자를 보호했다. 피가 흥건

한 장면이나 패닉 상태인 젊은이들, 총에 맞아 숨진 시체들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윤리의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상보다는 적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노르웨이 언론평의회는 2012년 9월 첫 주까지 총 62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이중 45건은 처리가 되었고, 6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처리된 사건은 인용 6건, 거부 11건이며, 5건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윤리강령의 위반이 명백히 아닌 13건은 언론평의회 사무처에 의해 기각되었고, 제3자인 신청인이 보도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건들은 언론평의회 위원회의 검토 후 기각하였다.

2-2. 어린이 희생자의 사진

Dominique von Burg
스위스 언론평의회 위원장

스위스 알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났던 벨기에 초등학생들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터널 벽을 들이받아 28명이 숨진 스위스 사상 최악의 버스 사고가 2012년 3월 13일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22명)이 12살 어린이들이었고, 24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

이 사고에 대해 독일, 벨기에, 스위스의 일부 언론사들은 사망 어린이들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와 SNS에서 찾아서 부모의 동의 없이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다수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벨기에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언론사와 합의가 이뤄졌다. 벨기에 신문사 2곳은 사과문을 게재했고, “인터넷으로부터 개인의 정보와 사진은 공공의 이익이나 허가 없이 언론이 사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독일의 두 신문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언론평의회는 Berliner Kurier에

대한 불만은 인용한 반면, Bild에 대해 제기된 불만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Bild의 경우 해당 사진이 사망한 어린이의 출신지인 롬멜스(Lommels)시 시청 임시 영안실에 게재된 것으로, 신문사는 이 사진의 사용 허가권을 가진 2명의 공무원에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Berliner Kurier는 어린이들이 사망 직전에 스키장에서 스키 모자와 고글 등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Berliner Kurier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모자와 고글, 스카프를 착용해 일반 대중이 거의 분간하기 어렵고, 주된 배포처가 베를린인 Berliner Kurier의 특성상 독자들에게 벨기에가 출신지인 사망 어린이들이 특정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평의회는 어린이들이 스키장에서 웃으며 행복해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그 유족과 친구들에게 더 큰 슬픔을 줄 수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독일 언론평의회는 사망한 어린이들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적인 일기내용을 Berliner Kurier가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스위스에서든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아직 스위스 언론평의회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의도에서 초상을 공표한 것이라는 언론사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SNS에 게재한 개인의 일기와 같은 글(텍스트)을 보도하는 것이 SNS 상 사진을 보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라 볼 수 있는지, 개인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을 언론이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야기하였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이므로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 역시 공개 정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망 어린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언론 윤리강령에 따

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므로 사진을 공표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아직까지 스위스 언론평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어린이들의 페이스북 등에서 자료를 찾아 보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자료 조사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0년 전 스웨덴 수상이 스톡홀름에서 칼에 찔린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그가 사망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이를 근거로 많은 언론이 오보를 한 사건이 있다. 또한 개인의 SNS는 누구에게나 공개가 허락된 공간이 아니며 어린이의 초상 사용은 특별히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하고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2-3.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 사진

Lutz Tillmanns
독일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약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했던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가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인해 2011년 10월 사망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수많은 언론매체가 카다피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사망 사진(카다피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장면의 사진으로 사실 사진이 촬영된 순간에 그가 사망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을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총 52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2011년 12월 8일 결정을 내렸다.

먼저, 카다피의 참혹한 사체를 보도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2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윤리강령 제11조(선정적인 보도와 청소년의 보호)는 “언론은 폭력과 잔혹성, 고통 등 선정적인 보도를 삼가야 하고, 청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언론이 카다피의 참혹한 사체를 보도한 것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독재자인 카다피의 죽음은 공적인 관심사이므로 영상 혹은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기록될 수 있고 ‘죽음’ 그 자체도 언론 보도 시 금기시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외에 많은 신청인들이 카다피의 사체를 보도한 것은 그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마찬가지로 이유로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물론 다수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사진의 경우에는 게재 위치와 크기가 중요한데, 1면에 잔혹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비단 청소년 뿐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비록 독일 언론평의회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참혹한 장면의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언론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카다피의 사망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점에 비록 카다피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직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에서 언론이 사망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근거 없음을 이유로, 근거가 부족한 14건에 대해서는 언론평의회 위원회를 통해 기각, 명백히 근거 없는 3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기각했다.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과 해당 언론인을 대상으로 주로 전화, 면담 등을 통한 구두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는데 카다피의 사망 시점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온라인 보도의 정정 : 공정한 정정보도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윤리강령과 실무 가이드라인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잘못된 보도라는 언론의 실수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언론사에 가능한 빠르게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책임을 가져야 하고 지면 매체의 경우 원칙상 다음호(일간지는 보도된 그 다음날, 주간지는 다음주, 월간지는 다음월)에,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는 즉시 정정보도를 공표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하므로 언론사 역시 정정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정정하는 것은 언론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게 하는 길이며, 책임감은 곧 언론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핀란드에서는 최근 언론 윤리강령 제20조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사 웹사이트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정보도는 영구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를 신설하였다.

2012년 9월 4일 핀란드 일간지 HS(Helsingin Sanomat)는 “광대버섯이 당신 건강에 위협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광대버섯 사진과 함께 “광대버섯은 독성을 지닌 핀란드에서 가장 흔한 버섯이다”라는 캡션을 달았다. 그러나 최초 보도 내용으로는 광대버섯의 위험성이 잘 부각되지 않아, 그 다음날인 9월 5일 “HS가 화요일 2면에 게재한 캡션 내용은 실수가 있었다. 광대버섯은 치명적인 중독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절대로 먹어선 안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였다. 또한 잘못된 온라인 기사는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없고 반드시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언제든 다시 검색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정

기사를 원 기사와 반드시 링크해 두어야 한다.

언론이 큰 실수(중대한 오보)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조그맣게 게재한다면 이는 대중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비웃음을 사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올바른 정정보도 방법은 언론의 신뢰성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였고,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부족한 분량 및 내용,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 등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거나, 정정보도를 하면서 그 반대 의견을 함께 게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통상 6~7개월)되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장기간 지속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언론사가 윤리성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이행하는 것이다.

원 보도가 1면에 게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6면에 게재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코소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코소보 언론평의회는 1면에 다시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으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같이 언론사의 윤리성에만 의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대다수 언론평의회가 실효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정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윤리강령에 정정보도 게재방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게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이나 스리랑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조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발표를 통해 들었다. 반면 대부분 유럽 국가의 경우, 모든 사항을 언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정정보도 게재방법에 대해서도 언론계

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윤리강령으로 제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해 큰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필수적이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의 판례를 볼 때, 몇 면에 게재할지, 정정보도 크기는 어떻게 할지 등 정정보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윤리규정에 새로운 조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평의회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4-1. PCC와 레버슨 청문회¹⁷⁾

Robert Pinker
前 PCC 임시 위원장

2011년 6월 News of the World 기사에 의한 폰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레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문회가 2011년 7월부터 진행되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수많은 증인 중 일부 전·현직 언론인들은 그간 언론계의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그 결과 PCC가 언론에 대한 규제기구로서 그간 제 기능을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비난론이 대두하였다.

PCC는 사건이 접수되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언론사 편집인에게 통보를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편집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정정이나 사과보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폰 해킹 사건과 레버슨 청문회로 인해 영국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언론의 자율규제 방식

17) 영국 PCC 관련 내용은 계간지 「언론중재」 1986년 가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1993년 여름호 특집논문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전망 -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9년 및 2005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 2010년 가을호 '해외실무연수보고서' 등에 수차례 기재되어 있다. 한국시각으로 2012년 5월 9일 PCC 폐지가 최종 결정되었고, 영국에서는 올해 11월 말 레버슨 보고서에 기초해 새로운 언론규제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2012년 봄~겨울호 '해외통신원 보고' 참조). 특히 영국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역사 및 최신 동향에 대해 올 연말 위원회가 「가칭」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관련 최신 동향 연구」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은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윤리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조사 권한과 필요하다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기관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기관의 설립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하는 반면, 언론계는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가입이 자유로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되 가입한 회원사들에게 정부의 간접적인 몇몇 우대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2011년 10월 PCC 위원장에 임명된 헛트 경(Lord Hunt)은 2012년 1월 레버슨 청문회에 이러한 양측의 의견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즉 새로운 기관은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중대하고 조직적인 규약 위반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사건에 대한 일부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헛트 경의 제안에 의하면, 발행인은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동의하에 새로운 규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계약은 민법으로 강제될 것이다. 또한 발행인은 심각한 규정 위반 시 공식에 의해 정해진 비율의 재정적 제재(벌금)를 수용하겠다는 계약 조항에도 동의를 해야 한다. 물론 벌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과 심각한 규정 위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관과 발행인 간에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는 현재 영국의 새로운 언론불만처리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헛트 경의 제안에 대해 찬동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매우 우수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헛트 경의 제안은 영국 사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언론불만처리 시스템을 법률로 정할 것인지, 여전히 언론의 자

율에 맡길 것인지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신뢰할 만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중도를 제공한다. 헛트 경의 제안에 개인적 의견을 첨언하자면 언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관련 법률의 향후 개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과 연계해 현재 PCC와 같이 자유롭게 불만처리절차와 윤리강령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관과 개별 언론사의 상업적 계약에 따라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재정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에 대한 법률 조항, 즉 ‘표현의 자유 그 자체에 공익이 있다’는 것과 같이 언론의 무조건적인 권리 행사 또한 몇몇 단서를 붙여야 하며, ‘심각하고 조직적인 규정 위반(serious or systemic breakdowns in standards)’ 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PCC와 나는 새로운 언론불만처리 시스템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 PCC가 제공하는 가치 있는 언론불만처리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PCC와 같은 자율규제기구 실효성이 낮다는 대중적 비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2. 온라인 이슈

John Horgan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위원장

온라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이 생겨났고 인터넷,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들로 인해 기존의 신문 등은 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신문의 수익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신문평의회의 재정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뿐 아니라 현재 많은 국가의 언론평의회가 이를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 매

체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것이며, 새로운 언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모바일을 통한 뉴스 제공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술 발전으로 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여지가 커졌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 인터넷의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어 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언론사에 대한 소송의 증가도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언론이 보도를 위해 온라인 상 뉴스 콘텐츠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의 SNS 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사가 다른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분쟁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언론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자의 저작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가 자체적인 모니터 직원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직원 고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선의 방안은 기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윤리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의 SNS 상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앞서 ‘어린이 희생자의 사진’이나 독일 언론평의회가 발표한 내용과 일부 유사하다. SNS 상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므로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친구 등 허락을 받은 특정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사적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최근 많은 국가의 언론평의회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부터 언론이 개인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 보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자의 불만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마다 혹은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 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상의 중요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 또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및 여론형성 등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론 및 언론인의 윤리의식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로 인해 언론의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

4-3. 언론윤리네트워크

Aidan White

언론윤리네트워크 사무총장, 前 IFJ 사무총장

언론윤리네트워크(Journalism Ethical Network)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 구축을 위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및 언론사의 정당한 경영, 언론인의 윤리적 행위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인, 편집인 및 미디어 소유자를 결속,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캠페인이다.

나는 영국 가디언 기자와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FJ) 사무총장으로 약 25년을 일했다. 오랜 시간 동안 언론분야에 종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대부분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권력기관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부나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특히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라 언론 환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언론의 책임 의식이나 자

올적인 규제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하나의 기사가 수없이 많은 경로로 확산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피해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보도가 확산되는데, 언론은 과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언론은 공익이란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오고 있는데 과연 언론의 모든 행동이 공익이라는 정당성을 가지는가.

대부분 언론평의회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 PCC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유럽 국가의 많은 언론인과 대중들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망각하고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그러나 나는 언론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있다. 오히려 언론인들은 정책 입안자와 의회 등에 언론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설득함으로써 이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계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언론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언론윤리 위반사례 및 개선책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모색,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 정부 기관과 법률에 의한 언론규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 방식으로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언론평의회가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언론사에 강력하게 정정 등 자율규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평의회와 언론인들은 나의 주장이 이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윤리네트워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론윤리네트워크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 회의에 처음 참석한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도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4-4. 덴마크 - 법률에 의한 규제

Sanne Godthaab Olesen
덴마크 언론평의회 디렉터

덴마크 언론평의회는 언론의 책임에 관한 법률(Media liability Act, 이하 'Act') 제 11조에 그 설립 근거와 구성이 규정되어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언론평의회 위원은 덴마크 법무부가 지명하는데, 위원장은 덴마크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부위원장은 덴마크 변호사 협회가 소속 변호사 중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 6명은 덴마크 언론인 협회의 추천에 의한 현직 언론인 2인과 언론사 편집인 중 2인, 문화교육 위원회(Council for Adult Education)에서 추천한 공익 대표자 2인으로 지명된다.

Act 제1조는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인쇄매체와 당국에 의해 승인되고 등록된 덴마크 라디오와 TV, 이들 인쇄매체와 라디오, TV와 동일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제8조에서는 인쇄매체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덴마크 언론평의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다. 또한 제 42조는 언론평의회 회의 성립과 진행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평의회 회의에는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중 1인과 언론인, 편집인, 공익 대표자 중 각 1인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Act 제43조는 언론평의회 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평의회는 연간 2회 이상 발행되지 않는 지면매체, 덴마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라디오와 TV,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웹사이트와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신청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보도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언

론평의회에 신청하거나 언론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언론사와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언론평의회는 Act 제49조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편집인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데 이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언론사가 언론평의회 결정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때 언론사는 그 결정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재해서는 안된다.

가장 강력한 조항인 Act 제53조 제2항은 만약 언론평의회 결정내용을 언론사가 공표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에 대한 벌금이나 편집인을 최대 4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벌금형이었다.

5. 표현, 미디어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 인격권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변화

Dirk Voorhoof

벨기에 겐트대 언론·저작권·언론윤리학 교수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서 발표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우 감명 깊게 발표를 들었으며 지금 내가 발표할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47개국이 가입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1949년 범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 및 법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후원 하에 정치·경제·사회·법률 분야에서 많은 협약들을 채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유럽회의 산하 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50년 유럽회의가 채택한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임을 확고히 하였고, 모든 유럽회의의 참여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ECHR 제10조는 “공공 당국에 의한 간섭 없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interferences by public authorities)”를 강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최우선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럽인권재판소는 1979년 Sunday Times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많은 판례에서 대중의 알권리와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권을 옹호해 왔다. 1986년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리아 기자 Lingens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를 기소한 것은 ECHR 제10조 위반이며, “사실과 사실적 주장에 대한 가치판단은 입증하기 어렵고,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비판은 언론인의 선한 신념에 따른 언론의 공익 감시자(Public Watchdog)로서의 역할이다”고 판시하였다. 2010년 아제르바이잔의 기자 Fattulayev가 국가의 국방 정책을 반대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구속되자, 국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1996년 영국의 기자 Goodwin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기소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더 큰 공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에 대한 보호는 언론의 자유에 핵심적인 사안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9년 프랑스 기자 Fressoz와 Roire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정부의 납세 장부를 보도함으로써 기소되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원칙상 언론인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일부 법률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보도를 통한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비록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고 직업적인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언론의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기소하는 것은 ECHR 제10조 위반이라 결정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6년 슬로바키아의 Radio Twist의 기자들이 한 주요 보험사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두 정치인들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를 방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럽인권재판소는 “기자들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기자들은 공익을 위한 필요로 해당 사안을 녹음,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을 기소한 것은 ECHR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 결정했다.

이처럼 다수의 사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보도 방법 및 언론의 의견 표명은 언론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해당 국가의 법원이나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즉, ECHR 제10조는 사건에 대한 본질뿐 아니라 보도된 방법까지도 보호하고 있다)해 왔으며,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에 의한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면책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

한편 영국의 폰 해킹 사건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사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사진 등을 무단으로 공표한 사건 등은 위법한 동시에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다. 반면 언론윤리강령의 위반이 반드시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재정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편견적인 보도를 한 경우, 사진의 왜곡 및 조작,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경우(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이를 이유로 법률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언론인의 위법한 행동이 반드시 언론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나 당국에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는 것 혹은 비밀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

한 행동이나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유럽인권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판결 시 해당 국가의 정부와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많은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07년 스위스 기자 Stoll이 스위스 대사 Jagmetti에 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해 정부로부터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ECHR 제10조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참조해 기사의 주된 목적이 대중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Jagmetti에 대한 불필요한 스캔들을 보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008년 몰도바의 한 신문사가 익명의 편지와 소문을 근거로 학교장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지 못하며 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몰도바 법원이 신문사가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ECHR 제10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기자가 교장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교장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언론인의 책임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Bild지 기자인 Axel Springer AG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기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한 유명 TV 배우가 체포, 기소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를 특정했다. 독일 법원은 배우의 인격권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보다 우월하며 심지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기자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2012년 2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 최고재판소(Grand Chamber)는 과연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보도된 사람이 얼마나 잘 알려진 사람인지, 보도의 주제나 주된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 기사의 공표에 앞서 당사자의 대응 정도, 언론의 정보 획득 방법과 진실성, 의문을 제기한 기사의 내용 및 형태와 결과, 언론에 대한 해당 국가의 법원 제재와 개입의 정도 등에 관해 많은 시사점이 담긴 판결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원고는 전문적인 기자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독일 언론평의회의 윤리규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해당 기자의 배우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